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가합5121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박성화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3,374,728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5.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2. 3. 27.까지는 연 6.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이유섭, 판사 홍 인

별지

청 구 원 인

1. 경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B(임차인)은 2019. 8. 6. 피고 C(임대인)와 광주시 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보증금 300,000,000원, 계약기간 2019. 8. 26. ~ 2021. 8. 25.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나.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9. 8. 13. F 주식회사(이하 'F은행'이라 한다)와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액 240,000,000원, 변제기 2021. 8. 25.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대출약정서).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F은행과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인인 피고 C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23. 피고 C에게 도달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1, 2, 3, 4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배달증명서, 녹취기록).

이후 F은행은 위 대출금을 임대인인 피고 C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대출금상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F은행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개인금융신용보험)(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추가약정서).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로는 연 9%입니다(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제4조).

라. 보험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B은 대출만기일인 2021. 8. 25. F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F은행은 2021. 9. 27. 원고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로 243,374,72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11. 24. F은행에게 위 금원(= 원금 240,000,000원 + 연체 이자(2021. 11. 23.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3,374,728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청구서, 갑 제6호증 입금증, 갑 제7호증 회수조회표).

F은행은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2022.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2022. 2. 22. 해당 채권양도통지서는 최종 반송된 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서 채권양도통지를 갈음합니다(갑 제8호증 1, 2 채권양도통지서 및 배달증명서).

마. 관련 소송

원고는 2022.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9호증 가압류결정문).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

원고는 피고 B와 맺은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에 의해 F은행이 보증보험사인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 B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갑 제4호증 '추가약정서[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제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일 익일인 2021. 11. 25.부터 2021. 12. 24.(보험금 지급일 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위 243,374,728원에 대하여 연 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 다음날(2021.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11%의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43,374,72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11. 25.부터 2021. 12. 24.까지는 보험계약이 정한 연 6%의, 2021.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대출계약이 정한 연 6.1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피고 C

피고 B은 F은행에게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행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 하였으나, 2022. 2. 22. 해당 채권양도통지서는 최종 반송된 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

로서 채권양도통지를 갈음합니다.

피고 C는 F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C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들간의 관계

원고는 피고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피고의 책임은 소멸되는 바, 피고들의 채무는 중첩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